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31

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

결 정

사 건	2022초기 추징보전청구
피 의 자	A
죄 명	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
피의사실요지	별지 1기재와 같다.
추징의 근거	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
추 징 보전액	
보전대상재산등	별지 2기재와 같다.
재산을가진자	별지 2기재와 같다.
청 구 인	검사

주 문

1. 피의자는 별지2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, 양도, 증여,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피의자는 별지2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, 각 예금채권, 각 예탁금반환채권, 각 예치금반환채권 및 가상화폐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추심, 양도, 질권의 설정,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제3채무자는 피의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피의자는 별지2 기재 각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,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3-31

증권반환의 청구,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피의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피의자는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추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피의자는 별지1 기재 피의사실로 인하여 부패재산을 취득하였고,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,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, 제8조,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2. 12. 14.

판사 _____